
「저출생 대책」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

2025. 4. 29

관계부처 합동

순 서

I. 최근 저출생 대응 과제 주요 이행실적 1

II. 추가 보완과제 4

III. 부처별 주요 과제 추진계획 7

1. [교육부] 영유아 교육 · 돌봄 공공 책임성 강화 7

2. [국토부] 신혼 · 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13

3. [공정위] 결혼준비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16

I. 최근 저출생 대응 과제 주요 이행실적

- ◇ 저출생 대응 과제 이행은 3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 중
- 기존 6.19대책 과제 뿐만 아니라 매월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한 추가 보완과제들도 신속히 후속조치 진행 중

1 [일·가정 양립]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우수기업 인증개선 등 추진

- ❶ 「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방안」 후속조치 본격 이행 ^{7차 회의 후속조치}
- (단계적 인증체계) 출산·양육에 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「예비인증」 및 장기간(12년이상) 유지 기업 대상 「선도기업」 제도 도입(4.29)
 - ▶ (예비인증) 기존 심사기준(12개) 중 육아친화 핵심지표(4개) 충족시 예비인증 부여
 - ▶ (선도기업 신설) 장기간(12년 이상) 가족친화인증을 모범적으로 유지한 기업 대상으로 우수사례,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
 - (사후관리 강화)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후관리분과^{*} 신설·개최(3.28)
 - * 법령위반 여부에 대한 정기점검 등을 기반으로 인증취소 등 추진
- ❷ 중소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경우 정부 지원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개정(입법예고 3.18~4.28) ^{8차 회의 후속조치}

출산·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구조

지급 시기	현 행	개 정
육아휴직·육아시간 단축 기간 중	50% 지급	50% 지급
기간 종료 후	6개월 이후 나머지 50% 지급 (기간 내 퇴사 시 미지급)	6개월 이후 나머지 50% 지급 (기간 내 자발적 퇴사 시 지급)

- ❸ 공무원 배우자의 임신검진동행휴가 신설(최대 10일) 내용을 담은 「국가·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개정 추진(입법예고 4.10~5.28)

현 행	개 정
여성공무원은 임신검진 목적의 휴가(최대 10일) 사용 가능	배우자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남성공무원도 휴가(최대 10일) 사용 가능

2 [양육·돌봄] 다양한 돌봄수요 대응을 위한 제도 보완 노력 지속

- ❶ 기존 4개 지자체(서울, 경남, 경기, 광주)에 실시 중이던 조부모 등 돌봄수당 지급사업을 8개 지자체(울산, 전남, 부산, 충남 추가)로 확대 시행(4.18~)

* 6개 지자체 '조부모 등 돌봄수당 지급 사업' 신설·변경안에 대한 사회보장위원회 사전심사 완료

구분		신설				변경	
		울산	전남	부산	충남	경기	광주
대상	아동	24~36개월	24~35개월	24~35개월	24~48개월	24~36개월	6세 이하
	양육자	조부모	조부모 (80세 이하)	조부모 (65세 이상)	조부모 4촌이내 친인척	조부모 4촌이내 친인척	조부모 4촌이내 친인척
조건	소득	중위소득 150% 이하 * 맞벌이 25% 경감		중위소득 150% 이하			
	요건	월 40시간 이상	월 40시간 이상	월 40시간 이상	월 40시간 이상	월 40시간 이상	1일 4시간 이상
수당(월, 만원)		1명 30 / 2명 45 / 3명 60	30	1명 30 / 2명 45 / 3명 60	1명 30 / 2명 45 / 3명 60	1명 30 / 2명 45 / 3명 60	20

- 추후 유사한 지원수준*을 토대로 나머지 지자체에도 적극 확산 추진

* (소득기준) 중위소득 150%이하, (돌봄조력자 범위) 조부모 + 4촌이내 친인척

- ❷ 공공 돌봄서비스 보완을 위한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 내용을 담은 「아이돌봄지원법」 개정 완료(4.22)

※ 아이돌봄 지원법 공포안('26.4월 시행 예정) 주요내용

- ① '아이돌보미' 명칭을 '아이돌봄사'로 변경하고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도입
- ②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등록 의무 및 안전조치 의무 등을 부과
- ③ 민간 서비스제공기관의 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(여가부장관→관할 경찰서장 등) 근거 마련

- ❸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이 되는 다자녀 가구 요건 완화 내용을 반영한 「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」 개정·시행(3.31)

현 행	개 정
▶ 12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▶ 36개월 이하 자녀 2명 이상	▶ 12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▶ (삭 제)

- ❹ 국내 체류외국인(유학생, 전문인력의 배우자 등) 대상 가사·육아 분야 활동 시범사업 개시(서울시, 3.24~)

* 4~6월 중 가사활동인 모집·교육 등을 거쳐 6월부터 가사활동인-가정 매칭 추진

- ❺ 학업·가정 양립을 위해 대학생이 양육 사유로 휴학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을 8세 이하→12세 이하로 확대하는 「고등교육법」 개정·시행(4.23~)

3 [주거 및 결혼·출산] 결혼 페널티 해소 및 결혼비용 부담 경감 등 추진

- ❶ 신혼·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, 출산가구 특공 기회 추가 제공 등 '결혼·출산 메리트'를 확대하는 주거 관련 하위법령 개정·시행(3.31)
- 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결혼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맞벌이 소득기준을 월평균 소득 200% 수준(4인가구 기준 17백만원)으로 상향(4.11) ^{10차 회의 후속조치}

법령	주요 개정내용	시행시기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	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 확대(18→23%)	'25.3.31.
	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상향(20→35%)	
	신규 출산가구 대상 특공 추가 청약 1회 허용	
	신혼 특공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 배제	
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	신혼특공시 무주택 조건을 입주모집 공고시에만 충족	'25.3.31.
	공공분양 일반공급 맞벌이 기준 신설(외벌이 100%, 맞벌이 최대 200%)	
	신규 출생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공임대 재계약 허용	
	2세 이하 자녀 가구에게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기회 제공	
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	전세임대 신혼·신생아Ⅱ유형 소득기준을 매입임대 수준으로 완화(외벌이 100% → 130%, 맞벌이 120% → 200%)	'25.4.11.

- ❷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표준약관 마련(4.3.)

결혼준비대행업 표준계약서 주요내용

서비스 내용 & 정보 제공	- 기본서비스 및 추가옵션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표지서식 마련 - 서비스별 가격표에 항목별 세부가격을 표시 & 이용자에게 제공·설명
위약금 기준 구체화	- 계약 해제·해지에 따른 손해배상·위약금 부과기준 명시 - 업체 평균 위약금 기준을 명시하고, 선정된 제휴업체의 위약금 기준 재안내
소비자 권리보장 등	- 대행업자가 일방적으로 서비스 변경시 이용자에게 추가비용 요구 금지 - 소비자 청약철회권 명시

- ❸ 결혼·출산·육아 관련 업체의 불투명한 계약 구조 및 탈루 우려 등을 바로잡기 위해 총 46개 사업장* 대상 강도높은 세무조사 추진 중(2.11~)

* 스.드.메 업체 24개, 산후조리원 12개, 영어유치원 10개

- ❹ 장거리 출퇴근 임산부 등의 이동편의 제고를 위해 서울·경기지역 간 광역버스 내 임산부 배려석에 유색 좌석시트 설치(4.22~) ^{5차 회의 후속조치}

- ❺ 영구 불임이 우려되는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생식세포 동결·보존비용(女 최대 200만원, 男 최대 30만원) 지원 개시(4.28~)

Ⅱ. 추가 보완과제

◇ **현장 의견**을 바탕으로 **국민 실생활**과 밀접한 **보완과제 8건 추가 발굴**

① 주거 및 일·가정 양립 분야 주요 정책과제 보강

①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거주 중 출산가구 인센티브 강화^{국토부}

- (현황) 일부 공공임대 유형에서는 입주 중인 가구가 출산하는 경우 보다 안정적인 주거 마련 지원을 위해 분양전환 관련 인센티브 제공 중

- ▶ (LH 뉴:홈 선택형) 6년 거주 후 분양전환 선택 → 신규 출산 시 3년 거주 후 선택 가능
- ▶ (서울시 미리내집) 2자녀 이상 출산시 우선매수청구권(분양전환 기회) 부여

- (개선)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*에 대해서도, 거주기간 중 신규 출산가구 대상으로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거주기간 단축(6년→3년) 추진

* 입주자 선택에 따라 6년간 임대거주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매입임대 주택

② 육아휴직 기간 중 대출 원금상환 유예 확산^{금융위}

- (현황) 육아휴직 시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감안, 주요 정책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기간 중 원금상환 유예 중

※ 주요 정책자금 대출 원금상환 유예 사유

- ▶ (학자금대출) 실직·폐업, 육아휴직, 재난 선포지역, 질병, 차상위계층, 대학생 창업 등
- ▶ (보금자리론) 실직·폐업, 소득감소(△20%), 질병·상해, 재난, 이혼, 출산·육아휴직 등
- ▶ (디딤돌대출) 실직·폐업, 소득감소(△20%), 질병·상해, 재난, 이혼, 출산·육아휴직 등

- 다만, 민간 금융권에서는 대체로 육아휴직을 원금상환 유예 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상황

- (개선) 육아휴직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 중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민간 금융권 대출*에도 확산하는 방안 검토

* 향후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, 지원 대상기준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와 함께 논의할 예정

2 아이돌봄서비스 제도 개선

1 아이돌보미 정신건강 관리 강화 여가부

- **(현황)** 아이돌보미 정신건강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, 이미 활동 중인 돌보미에 대해서는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 미흡
 - 현재 채용 단계에서만 검사도구를 활용한 정신건강 검사를 실시 중이며, 매년 계약갱신 시 제출하는 일반건강검진서에는 정신건강 항목 미포함*
 - * 일반건강검진에서 '정신건강검사(우울증)' 항목은 10년 주기로만 실시
- **(개선)**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전성·신뢰성 강화를 위해 검사도구*를 활용한 정신건강 검사를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까지 확대 적용
 - * 국립정신건강센터 우울증 자가검진(PHQ-9) 도구 및 여가부 자체개발 인·적성검사 도구 활용
 - 금년 중 현재 활동 중인 모든 아이돌보미 대상으로 자기검진을 통한 전수조사 실시
 - 정신건강 선별·검증 기능 강화를 위한 인·적성 검사도구 개선* 병행
 - * 마음건강 문항 비중: (현행) 20% → (개선) 40%(심화검사는 67%)

구 분	현 행	개 선
대 상	▶ 채용 단계	▶ 채용 단계 + 활동 중
검사 주기	▶ 일반건강검진으로 10년 주기	▶ 검증된 검사도구 등을 통해 매년* * '25 시범실시에 따라 검사 주기 조정 가능
검사도구	▶ 인·적성 검사 내 마음건강 문항 20%	▶ 국립정신건강센터 자가검진 도구 활용 및 인·적성 검사 내 마음건강 문항 40% (심화67%)

2 민간 육아도우미 양성교육 시간 단축 여가부

- **(현황)** 아이돌보미 양성교육(120시간)은 관련 직종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교육시간 일부 단축 또는 면제 중*
 - * (표준) 120시간(이론 40h 실기 60h, **실습 20h**)
(40시간 단축) 사회복지사, 간호조무사 등 유사자격, (면제) 보육교사, 교사, 의료인
- **(개선)** 돌봄인력의 효율적 양성을 위해 민간 등록기관*에서 활동한 육아도우미는 활동 경력을 실습시간으로 인정하여 교육시간 단축**
 - *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개정('26.4월 시행)에 따라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(법 제11조의2)
 - ** 민간 돌봄 경력 기간에 따라 실습 인정시간에 대한 차등 적용 검토

③ 임신·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

① 은행권 영유아 동반 보호자 패스트트랙 도입 금융위

- (현황) 관공서·문화시설 등에서 영유아 동반 보호자(만7세 이하)는 줄 서지 않고 입장·민원처리할 수 있도록 전용 창구 운영 중
- (개선) 영유아 동반 보호자 전용 창구 이용을 은행권으로 확산 추진*

* 은행별로 자율 운영 중인 취약계층 전용창구 이용대상(고령자, 장애인, 임산부 등)에 영유아 동반 보호자를 포함하도록 유도

② 다자녀 가구 놀이공원 이용 혜택 확대 롯데월드

- (현황) 롯데월드는 2자녀 이상 가구에 회원권 할인 혜택* 적용 중
- (개선)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큰 3자녀 이상 가구는 할인폭 확대

	현 행		개 선	
연간 회원권	2자녀 이상 15~20% 할인	⇒	2자녀	15~20% 할인
			3자녀	20~25% 할인

③ 다자녀 가구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확대 국토부

- (현황)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정기·종합검사에서 3자녀(만18세이하) 다자녀 가구에 대해 검사 수수료(정기 2.3~2.9만원, 종합 5.4~6.5만원) 15% 감면* 중
- (개선) 3자녀 이상 가구 검사수수료 감면 비율을 15%→30% 로 확대

* 장애인 중증 50%/경증 30%, 한부모 80%, 기초생활수급자 100% 감면

Ⅲ. 부처별 주요 과제 추진계획

1. [교육부] 영유아 교육·돌봄에 대한 공공 책임성 강화

구분	'23년	'24년	'25년	'26년	'27년	'30년
공공보육 이용률(%)	40	43	46	48	50	50이상
늘봄학교 참여 학부모 만족도(%)	-	80.0	82.0	83.0	85.0	90.0

1 '25년 주요 추진계획

① 유보통합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 철저

※ 6.19대책 주요 과제

- ▶ (운영시간 확대) 기본운영시간(8h)+돌봄(4h)제공, 방학 중 운영으로 공백 해소

현 행				개 선			
유치원	교육과정 (4~5시간)	방과후	돌봄	아침 돌봄	기본운영시간 (교육+연장, 8시간)	저녁 돌봄	
어린이집	기본교육(7시간)	연장보육					
9:00		16:00		7:30	9:00	17:00	19:30

- ▶ (교사:아동 비율 개선) '27년까지 0세반 1:3→1:2 / 3~5세반 평균 1:12→1:8
- ▶ (무상교육·보육) '27년까지 3~5세 단계적 무상교육·보육 실현 추진

□ 유보통합의 첫 단계로 '영유아학교 시범사업(145개교)' 운영 중('24.9월~)

- ① 시범학교에서는 운영시간 확대(8h+4h), 교사 추가배치 등을 포함, 교육·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4대 과제*를 선제적으로 시행 중

* ①운영시간 확대 ②교사:아동비 개선 ③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④교사 전문성·역량 강화

- 전체 영유아가 4대 상향평준화 과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도교육청별 단계적 확산 로드맵 마련·시행

- ②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, 국회·유관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통합기준 조율, 관련 법령 제·개정*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노력 병행

* 통합법(유아교육법<유치원> 및 영유아보육법<어린이집>)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

□ 학부모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'거점형 돌봄기관' 약 50개소 신규 지정·운영 중('25.4월~)

○ 거점형 돌봄기관에서는 운영시간 확대(8h+4h)가 어려운 인근 유치원·어린이집의 돌봄 수요를 통합하여 아침, 저녁, 휴일 등 서비스 제공*

* 지역수요에 맞춰 기관별로 아침·저녁·방학 돌봄 / 토요일·휴일 돌봄 등을 선택적으로 운영

○ 금년 중 운영성과를 토대로 '26년 이후 돌봄기관 추가 지정 추진

□ 유아교육비·보육료 추가지원 대상을 4세까지 확대하고,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'27년까지 3~5세 단계적 무상교육·보육 실현 추진

○ 학부모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5세에 이어 '25년부터 4세 아동에게도 유아교육비·보육료 추가지원금(월 5만원) 지급 중('25.1~)

* 5만 원 추가지원 총 예산 : ('24) 173,539백만원 → ('25) 327,160백만원

② 국공립어린이집·시간제 보육기관 등 보육 인프라 대폭 확충

※ 6.19대책 주요 과제

- ▶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지원 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
- ▶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 확대, 야간연장 및 휴일 어린이집 확대

□ (국공립어린이집 확대) 공공보육이용률* 목표 달성('25년 46%)을 위해 신축·전환 등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지속 확충

* 공공보육이용률(%): ('21) 35.3 → ('22) 37.8 → ('23) 40.0 → ('24) 43.0

①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신축, 매입, 공동주택 리모델링, 장기임차*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가 확충 지원('24년 369개)

* 신축 8.5억원, 리모델링 1억원, 장기임차 2억원, 기자재비 1천만원 등 지원

② 정부청사·지자체·국가기관 등 공공부문 직장어린이집 민간 개방 노력 지속(고용부 협력)

- 상생형·민간 개방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홍보 강화 및 활용 증진을 위한 제도 보완 추진

※ '24년 하반기부터 정부청사 등 공공부문 직장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
지역주민 등 민간 개방을 적극 유도 중

* ①4대 정부청사 운영 직장어린이집(18개소) 입·퇴소 기준 개정 및 시행('24.11월)

②정부청사 외 지자체(147개소), 국가기관(329개소), 공공기관(138개소) 운영
직장어린이집 개방 요청 협조공문 시행(저고위, '24.9월)

⇒ 4대 청사 어린이집의 경우, 개방 시행('24.11월) 이후 민간 자녀 186명 입소(기관별 현원대비 4~28.8%)

③ 지역별 수요·공급 변화, 유보통합 등 현장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,
유치원 공급 등과 연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안도 새롭게 마련

-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·교육청 대상 국공립어린이집
확충 가이드라인 제작·배포('25.4)
- 관련 전문가, 지자체 담당자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 세미나 개최('25.下)

□ (시간제보육 활성화) 양육가정의 일시·긴급 돌봄 서비스 수요 대응을 위해
대폭 확대*한 시간제보육반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 및 이용 활성화

* ('23) 1,002개반 → ('24) 2,046개반 → ('25 목표) 2,315개반

①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신규기관 진입 유도를 위한 혼합연령반 허용¹⁾,
통합반 운영비 지원요건 완화²⁾ 등 관련 제도 개선 既완료('25.3)

* 1) (기존) 출생연도 기준 반편성 → (개선) 0·1세반 혼합, 1·2세반 혼합반 운영 가능
2) (기존) 월 80시간 이상 운영 시 지원 → (개선) 이전 달 운영 실적만 있으면 지원

②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(라디오, 엘리베이터 전광판, 모바일 등)를
활용하여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집중 홍보 추진('25.4~)

③ 시간제보육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시간제 보육프로그램 개선 및
교육자료 제작·보급, 시간제보육 교직원 교육 강화 등 병행

□ **(사회복지법인 퇴로 확보 지원)** 원아 감소 등으로 추가 운영이 곤란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원활히 폐원할 수 있도록 퇴로방안 마련

○ 폐원 시 잔여재산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민간·가정 어린이집과 달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해산 시 국가·지자체로 잔여재산 귀속

⇒ 인구 감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해산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잔여재산을 개인 귀속 또는 유사 목적 법인에 출연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* 신설 추진

* 관련 내용을 담은 「영유아보육법」 개정안(5건 발의) 국회 상임위 계류 중

3 영아·장애아 보육 등 돌봄 취약부문 필수 인프라 확충 지원

※ 6.19대책 주요 과제

- ▶ 인구감소지역 등에 영아반 유지를 위한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
- ▶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매년 80개씩 확충

□ **(영아반 지원)** 영아반(0~2세) 인프라 확충·유지를 위한 보육료 지원*을 지속하고,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돌봄 취약 지역에는 인센티브 보강

* 민간·가정 어린이집 0~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% 이상일 경우, 정원 대비 부족한 인원만큼 기관보육료(1인당 23~63만원, 기관별 최대 201만원) 지원 중('24.1월~)

○ 금년부터 인구감소지역 소재 민간·가정어린이집*에는 영아반 개설(유지) **인센티브* 63만원(0세반 분) 추가 지원** 중(기관별 월 최대 201만원→264만원)

* 행안부 고시 89개 지역 소재 민간·가정어린이집 대상

□ **(장애아 지원)** 장애아 전문·통합 어린이집을 **'25년 80개 이상*** 확충

* 장애영유아어린이집: ('23) 1,634개소 → ('24) 1,896개소 → ('25) 1,976개 이상

○ 장애통합어린이집 지정 요건 완화*,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(80%) 등으로 확충 유도 → 장애아동의 어린이집 접근성 제고

*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 신청 당시 3명 이상 장애아 보육 의무 요건 및 장애아통합반 1층 배치 시 엘리베이터 및 경사로 설치 의무 완화

4 교육·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**늘봄학교 확산 및 현장 안착에 주력**

※ 6.19대책 주요 과제

- ▶ 늘봄학교 확산 및 단계적 프로그램 무상운영 확대
- ▶ 학생·학부모가 희망하는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

□ **(늘봄학교 확대)** '25년 늘봄학교 참여를 **희망하는 초1·2학년 전원***
(전체 초1·2학년의 80% 이상)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

* 초1·2 늘봄학교 참여: '25.3월말 기준 55.2만명(희망자 전원) 참여, 참여율 81.3%

① '25.3월 학사일정 시작에 맞춰 **초1·2학년 학생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무상운영 중**

② 늘봄 도입·확대 과정의 **학부모 혼란 해소**를 위해 **관련 용어 통합*** 및 홍보, 수요를 고려한 **늘봄과정·시간 편성**을 위한 단위학교 안내

* (기존) 방과후학교, 돌봄 → (통합) 늘봄과정(맞춤형 프로그램, 선택형 프로그램(교육/돌봄))

③ 일반 교사의 추가 행정부담이 없도록 **늘봄지원실장(1,200명), 늘봄 실무인력(7,000명)**을 배치('25.4월 기준)하여 업무 전담체계 구축 중

□ **(프로그램 개선)** 초1·2 **학생·학부모 만족도 제고**를 위해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예체능 활동 지원 강화 추진

① 지자체, 지역 대학과 긴밀히 협업하여 **학부모·지역수요** 등을 고려한 다양한 **늘봄 프로그램**(예: 학습과 연계된 놀이영어 등) **개발·보급*** 지속

* (1학기) 교육부·교육청 공모사업을 통해 6,200여개 학급에 대학 등 연계 프로그램 제공
(2학기) 지역별 RISE 예산 350억원을 통해 대학 연계 프로그램 본격 제공

② 예체능 동아리 활동 내실화, 예체능 교육 프로그램 제공 확대를 통해 정규수업 및 늘봄학교를 연계한 **1인 1예체능 프로그램*** 지원 추진

* (체육) 초등 학교스포츠클럽 참여학생 수 ('24) 221만 명 → ('25) 230만 명 목표
(예술) 초등 오케스트라 운영 ('23) 598교 → ('24) 751교 → ('25) 800교 목표

〈 유보통합 추진 〉

- (서비스 질 제고) ‘유보통합 실행계획’ 발표(’24.6) 이후 영유아학교 시범 사업을 통해 상향평준화 과제*를 추진 중이나, 아직 현장의 체감도 부족

* (상향평준화 과제) ①충분한 이용시간 및 일수 보장, ②교사 대 영유아 수 비율 개선, ③수요 맞춤 교육·보육 강화, ④교원의 역량 강화

⇒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개편방안 시행으로 보다 많은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·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부모 체감도 제고

⇒ 국회·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유치원-어린이집 통합기준(교사 자격·양성체계, 설립·운영기준 등) 조율* 및 법령 제·개정 등 제도기반 정비 필요

〈 공공보육 개선 〉

- (국공립어린이집 확대)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감소·유보통합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현실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선방안* 마련 추진

* 지역별 수요·공급 현황 분석 기반 + 유보통합에 대비한 유치원 연계 확충방안 등 고려

- (시간제보육 활성화) 양육 부모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넓히고, 다양한 돌봄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 활성화 필요

2. [국토부] 신혼·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

구분	'23년	'24년	'25년	'26년	'27년	'30년
출산가구 주택공급 물량(만호)	7.2	7.2	12	12	12	12이상
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(만호)	3.6	3.6	4.6	4.6	4.6	4.6이상

1 '25년 주요 추진계획

① 확대된 제도의 현장 정착에 최우선 방점

- ❶ 지난해 발표한 주거분야 저출생 과제 20개 중 17개 조치 완료
- ❷ 잔여 과제는 가계대출 및 주택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시행시기 검토(필요시 정책 조정)

< 주거 마련 부담완화 관련 저출생 대책 과제 >

주요 과제	시행 시기
• 공공·민간분양 특별공급 물량에 '저출생, 고령사회 대응' 목적의 배정 추가 및 민간분양 면적 제한 기준 완화	'24.10.1.
• 5만호 신규택지(서울 서리풀 등 4개 지구) 추가 발굴	'24.11.5.
• 뉴홈 선택형 청약당첨 후 신규 출산가구는 최소기간 경과 후 분양기회 부여	'24.11.12.
• 신생아 특례 구입·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(1.3억→2억)	'24.12.2.
•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시 출산가구를 1순위로 선정 •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별 면적기준 폐지	'25.1.1.
•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 확대(18%→23%) •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상향(20%→35%) • 신규 출산가구 대상 특공 추가 청약 1회 허용 • 신혼 특공 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前 청약당첨 이력 배제 • 신혼 특공 시 무주택 조건을 입주모집공고 시에만 충족하도록 완화 • 공공분양 일반공급 맞벌이 기준 신설 • 신규 출산가구 대상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공임대 재계약 허용 •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 지원 및 임대유형 전환 허용	'25.3.31.
•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(7.5천만→1억원) • '25년 이후 출산가구 대상 구입·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추가 완화(2.5억원) • 신생아 특례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 가구 대상 추가 우대금리 적용(0.2%p→0.4%p)	시행시기 검토

② 출산 가구 주택공급 정책의 실행력 강화 및 주거지원 확대

- ❶ 출산가구 12만호+a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계획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고, 민간분양 시장 정상화에 중점
 - (공공부문 공급 독려) 공공주택 공급점검 TF 및 지자체 협의체 등을 가동하여 계획 물량의 조속한 인허가·착공 지원
 - * 공급점검 TF(1차관 주재)를 통해 착공, 인허가 추진현황 등을 점검하고, 정부·지자체 상설 협의체를 가동하여 연말('24~'25)까지 매입임대 12만호(신혼출산가구 6만호) 적기 공급 지원
 - (민간 공급여건 개선) 민간 주택을 출산가구에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지역 미분양 해소* 등 주택건설 산업 정상화에 정책 역량 집중
 - * (정부) 지방 전지역(수도권 제외)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천호 매입 실시('25.4~)
 - (민간) 1주택자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·종부세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('25.~)
- ❷ 그린벨트 해제 등 수도권 중심 신규택지 발굴을 통해 신혼부부, 출산 및 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추진
 - * 서리풀 지구 2만호(2만세대 중 55%를 신혼부부용 장기전세 주택Ⅱ로 공급) 포함 수도권 신규택지 5만호를 발표('24.11)하였으며, '26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 완료 예정
- ❸ 신혼·신생아 출산가구 중심으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*('25년 든든전세 1.4만호 등) 공급 추진
 - * 입주자 선택에 따라 6년간 임대거주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매입임대 주택

3 제도 정착을 위한 밀착 홍보 및 현장목소리 청취

- ① 4월부터 신혼·출산가구 주택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본격 시행
→ 현장 체감도 제고를 위해 신혼·출산가구 대상 집중 홍보 실시

< 주거분야 과제 하위법령 조치사항 >

법령	주요 개정내용	시행시기
주택공급에 관한 규칙	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 확대(18→23%)	'25.3.31일
	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상향(20→35%)	
	신규 출산가구 대상 특공 추가 청약 1회 허용	
	신혼 특공시 청약 신청자 본인의 결혼 전 청약당첨 이력 배제	
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	신혼특공시 무주택 조건을 입주모집 공고시에만 충족	
	공공분양 일반공급 맞벌이 기준 신설(외벌이 100%, 맞벌이 최대 200%)	
	신규 출생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공임대 재계약 허용	
	2세 이하 자녀 가구에게 넓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기회 제공	

- ② 민간과 협력하여 젊은 세대 맞춤형 홍보 콘텐츠* 지속 마련 및 전파

* 예시) 엔조이 커플(구독자 250만)과 함께 협력하여 유튜브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 중(조회수 13만)

- ③ 찾아가는 청년 주거상담소* 등을 통해 신혼가구·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정책 등 주거정책을 대면 설명하고 현장 목소리 청취

* 일반청년·대학생·군장병 등을 대상으로 청년주거정책 정보와 대면상담 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'25년 본격 운영 예정('25.3~)

2 향후 대응방향

- (주택공급 여건 개선) 민간 공급이 원활히 되도록 재건축·재개발 지원 강화*

* 정비사업 조합에 최대 50억원 규모의 초기사업비 저리(2.2~3.0%) 융자 개시

- 아울러 현재 국회 논의 중인 입법과제*(재건축·재개발사업 절차 간소화, 사업 불확실성 해소 등)가 신속 추진되도록 국회와의 소통·협력 강화

* 「재건축·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정안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개정안 등

- (정책 접근성 제고) 마이홈포털*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신혼·출산가구 주거지원 정책의 정보 접근성을 평가, 필요시 개선 방안 마련

*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주택공급, 주택 금융 등 주거복지 정책 정보를 제공하는 포털

3. [공정위] 결혼준비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

1 과제 추진 현황

- **(불공정약관 직권조사)**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불공정약관 시정('24.11월)
 - 사진 파일 구매비, 드레스 피팅비 등 필수적인 서비스를 따로 구성하여 추가요금을 내도록 하던 것을 기본제공 서비스에 포함
 - 종전 불명확했던 추가요금 가격범위와 위약금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표시
 - 옵션 가격의 범위와 평균적인 위약금 기준을 명시하고, 고객이 특정 스·드·메 업체를 선택하면 구체적인 옵션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확정적으로 다시 고지하도록 시정
 - 실제 서비스 개시 여부를 불문하고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던 것을 서비스 개시 전과 후를 구분하여 위약금 기준을 합리화
 - 계약 체결 이후 서비스 개시 전과 후를 구분하여 취소 및 환불 규정을 마련하고, 청약철회 기간도 법에 부합*하도록 시정
- * 웨딩박람회 등을 통해 계약 체결시,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, 할부로 계약 체결시, 할부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
- **(가격정보 공개)** 결혼서비스(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) 가격 자율 공개 및 가격조사 추진
 - **(자율공개)** 주요 결혼서비스 업체(11개)의 회사 누리집 또는 한국 소비자원 가격정보사이트 '참가격'에 필수·선택품목 가격 공개(1.24.~)
 - **(가격조사 및 결과공개)** 지역별·품목별 결혼서비스 가격조사·공개 추진
 - 전국 약 500개 업체 대상 필수·주요 선택품목 가격정보 수집·분석(4월~)

가격정보 수집대상 품목

구 분	결혼식장	결혼준비대행서비스
필수품목	대관료, 장식 비용, 식음료 비용	스튜디오 촬영 드레스, 메이크업
주요 선택품목	추가 장식·연출비, 추가 식음료 비용, 행사(추가 연주, 사회 등) 비용, 사진·영상 촬영비, 폐백 등	컨셉 추가, 야외·야간 촬영, 앨범 페이지 추가, 혼주 메이크업·헤어, 액세서리 등

- 지역별·품목별 평균가격 등 정보 소비자원 '참가격'에 공개 예정(5월~, 격월)
- * '참가격' 내 결혼서비스 메뉴도 신설(11월 예정)

- **(소비자인식 평가) '소비자시장평가지표'**에 결혼서비스 시장을 추가하여 조사 완료('24.11, 5월중 분석보고서 공개 예정)

* 40여개 시장에 대해 소비자가 평가하는 설문조사(총 4만 표본)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소비자시장 개선을 위한 국민 체감형 소비자정책 추진에 기초자료로 활용(한국소비자원)

- **(표준약관 제정) 서비스 내용 및 가격 정보 제공, 위약금 기준 구체화** 등의 내용을 담은 결혼준비대행업 **표준약관 제정 및 배포**(3월)

* (주요내용) 서비스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부 서식 마련, 스드메 서비스별 가격표에 항목별 세부가격을 표시하고 이용자에게 제공·설명, 계약 해제·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및 위약금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등

- 이를 위해 결혼준비대행 업계 현황, 소비자피해 유형 등에 대한 **실태조사**(서울YWCA, '24년 6~12월) 및 **사업자 간담회**('24.9~12월) 실시

- **(가이드라인 제작)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가이드라인**(체크리스트 포함)을 카드뉴스 및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보급('24.6월)

-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이용시 주의하거나 꼭 알아야 할 사항 등을 제공

- **(소비자피해주의보발령) 최근 3년간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상담 사례를** 분석하여 **주요 피해 유형*** 중심으로 **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**('24.9월)

* 위약금 과다 청구, 계약불이행 및 청약철회 거부 등

2 향후 계획

- **불공정약관 시정 관련 이행점검**('24.12월~)

- 결혼준비대행업체와 추가적인 소통을 통해 시정된 **약관 이행여부**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

- **(가격정보 공개) 결혼서비스(결혼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체) 가격 자율** 공개 및 **가격조사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개**

- **(자율공개) 기존에 공개한 업체의 가격정보를 분기마다 업데이트** 하고,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**추가 참여를 독려**

- **(가격조사 및 결과공개)** 지역별·품목별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 예정
 - 필수·주요 선택품목 가격정보 수집·분석(4월~, 매월)
 - 지역별·품목별 평균가격 등 정보 소비자원 '참가격'에 공개 예정(5월~, 격월)
- '소비자시장평가지표'를 통해 결혼서비스 시장 조사(격년)

□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 교육 실시(5월)

- 주요 사업자 대상으로 표준약관 내용 및 불공정약관 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표준약관의 적극적 사용을 권장

3 추진 애로사항

- 결혼서비스업은 자유업종으로 법적 관리체계가 없어 자율적으로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고,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존재
- 결혼서비스업의 가격공개 제도 마련을 위하여 결혼서비스업법 조속한 제정 필요

* 「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(조은희의원 발의, '25.2.19)